

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선임규칙

[시행 2025. 2. 8.] [제2호 시행령, 2025. 2. 8., 전부개정]

사단법인 동양서예협회 사무국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정관 제41조에 따라 사단법인 동양서예협회(이하 "본회"라 한다)의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자격 심사 및 선정

제2조(선정방법)

- 추천작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10점 이상 취득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.
- 초대작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15점 이상 취득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.
- 2024년부터는 전통부문과 현대부문으로 분리하여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증서를 수여한다.

제3조(수상실적 배점기준)

-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 입상자 배점
 - 입선: 1점
 - 특선: 3점
 - 삼체상: 5점
 - 오체상: 7점
 - 우수상: 7점
 - 최우수상: 8점
 - 대상: 9점
- 본회 주최 국제서예전람회 수상실적은 제1항의 배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- 입상작품이 화첩에 수록된 경우 0.5점을 추가 가산한다.

- ④ 대상 수상작품이 국립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소장된 경우 1점을 추가 가산한다.
- ⑤ 같은 해 입상점수는 최고점수 하나만 인정한다.

제4조(지회 전람회 배점기준)

- ① 본회 지회 주최 전람회의 수상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배점한다.
 - 1. 광역시·도 규모: 2점
 - 2. 시·군·구 규모: 1점
- ② 3년 연속 수상실적 보유 시 1점을 추가 가산한다.
- ③ 같은 해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 또는 타 지회 전시회 취득점수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점수 하나만 인정한다.

제5조(학력 및 경력 가산점)

- ① 서예 관련 학력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.
 - 1. 서예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및 수료자: 2점
 - 2. 서예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및 수료자: 추가 1점
 - 3. 서예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 및 수료자: 추가 2점
- ②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한다.
 - 1. 서예관련 자격증 보유자: 1점
 - 2. 전통서예 전수자(공인된 서예가 문하생): 2점
 - 3. 해외 서예관련 학위 취득자: 동등 학위 수준으로 인정

제3장 심사절차

제6조(자격심사위원회)

- ① 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1. 초대작가 5인 이상
 - 2. 외부 전문가 1인 이상
 - 3. 이사회에서 선임한 위원

-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 중 과반수는 신규 위촉하여야 한다.

제7조(심사방법)

- ① 심사는 연 2회 실시하며, 서류심사와 작품심사로 구분한다.
- ② 작품심사는 최근 3년 이내 제작된 대표작품 3점을 대상으로 한다.
- ③ 심사위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자격을 부여한다.

제4장 자격관리

제8조(자격유지 의무)

- ①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 - 1. 2년마다 자격갱신을 위한 작품 제출
 - 2. 연 1회 이상 협회 주최 전시회 참가
 - 3. 신진작가 지도 및 멘토링 참여
 - 4. 소정의 회비 납부

제9조(자격정지 및 취소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한다.
 - 1. 2년 연속 전시회 불참
 - 2. 회비 2년 이상 미납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.
 - 1. 협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
 - 2. 자격정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
 - 3. 본인이 자격포기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

제5장 특별규정

제10조(특별선임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로 특별선임할 수 있다.
1. 서예문화 발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자
 2. 국내외 서예교육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
 3.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타 서예단체 초대작가

제11조(명예작가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작가로 추대할 수 있다.
1. 30년 이상 초대작가 자격을 유지한 자
 2. 만 70세 이상으로서 협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
- ② 명예작가는 회비 및 출품 의무를 면제한다.

제12조(국제교류)

- ① 국제 서예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정한다.
1. 국제서예전람회 수상실적
 2. 해외 서예단체와의 교류전 참가실적
- ② 해외 서예단체와 상호인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
부칙 <제1호, 2023. 08.24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호, 2025. 02.08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-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자격은 이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제8조의 의무사항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.